

참고

조건부 허가자 잔여교육 수강 관련 주요 질의응답

Q1 잔여교육 수강 대상자 누구인가요?

A1

- '19.11.17 ASF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신규자 교육(24시간)을 받지 못하고 신규교육(6시간)을 수료한 후 조건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 됩니다.

Q2 잔여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A2

- 컴퓨터·핸드폰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(www.farmedu.kr)에 접속 후 로그인 시 교육 대상자는 자동으로 잔여교육 수강 알림 창으로 연결되므로 해당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..
- 만약, 잔여교육 자동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학습상담지원센터(☎1833-4265)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

Q3 잔여교육을 기간 내에 수료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?

A3

- 신규허가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* 신규자 교육은 축산업허가를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됨

Q4 잔여교육 의무 면제 사유

A4

- '22년 5월말 이전에 폐업하는 자(말소대상자 포함)
- 신규 축산업 허가자 교육(24시간) 전체과정을 다시 이수한 자
- ※ 휴업자는 면제 대상이 아님 : 추후 축산업을 재개할 예정이므로 잔여교육을 수강하여 축산업 신규허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Q5 교육대상자 명단에서 일부 교육대상자의 인허가 정보가 없는 사유

A5

- 인허가 정보가 없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인허가를 받은 학습자의 행정정보와 교육생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
- 학습자가 단순히 교육수강만 한 경우(인허가를 실제로 받지 않는 경우) 등
- ⇒ 현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은 월 1회 행정정보와 교육생 정보를 연계시키고 있지만, 학습자가 본인인증 등을 안 한 경우 정보연계가 불가합니다.

Q6	이전 교육대상자 명단과 달리 일부 교육대상자의 인허가 정보가 추가된 사유
A6	<p>○ 교육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생 정보와 행정정보가 연계되신 분들입니다. * 추후 공유될 교육대상자 명단에서도 업데이트된 행정정보가 반영될 예정입니다.</p>
Q7	일부 학습자가 교육대상자 명단에 추가된 사유
A7	<p>○ 조건부 허가자 잔여교육 대상자 선정 당시(22.2월), 행정정보의 등록증 소지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. ○ 제외된 대상자들 중, 지자체 및 교육대상자가 학습상담지원센터로 잔여 교육 수강대상자*로 요청하실 경우, 시스템 확인 후 교육대상자로 추가 해드리고 있습니다. * 인허가가 등록→허가로 변경되신 경우 등</p>
Q8	교육대상자 명단에서 일부 대상자가 교육제외 표시된 사유
A8	<p>○ 학습자가 학습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교육 대상제외를 요청한 경우,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제외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- 신규 허가자 교육(24시간) 전체 과정을 다시 이수한 자 - 승계 및 양도/폐업으로 인하여 인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자 - 조건부 허가자 교육을 잘못 신청한 자 등</p>
Q9	조건부 허가자 잔여교육(18시간)이 교육시스템에는 14시간으로 되어있는 사유
A9	<p>○ 조건부 허가자 잔여교육의 경우, 시간단위 대체가 아닌 과목단위 대체입니다. 시스템 과목명에 시간이 표시되어있지만, 이와 상관없이 교육 수료하시면 됩니다.</p>
Q10	교육관련 의문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요?
A10	<p>○ 축산종사자 교육 학습상담지원센터 ☎1833-4265 ○ 단위축협 축산종사자교육담당자(교육운영기관 지정기관) ○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이트 : www.farmedu.kr</p>